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1. 교육훈련경력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교육훈련경력"이란 다음의 경력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훈련행정 또는 직업훈련연구 경력을 포함한다) 또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 경우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나) 법령에 따라 직접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 및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대학 등)

다) 법령에 설치 근거가 있거나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등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지정직업훈련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등)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로 설치된 법인에서 교사, 교원 및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

나. 위의 가목1)과 가목2)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에서 교사, 교원 및 교관으로 근무한 사람의 교육훈련경력은 주당 교육시간이 이론 9시간 이상 또는 실기 15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 다만,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대체 인정할 수 있다.

2. 실무경력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실무경력"이란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다음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1) 응용, 제작, 제조, 조작, 보수, 정비, 채취, 검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

2) 사무·서비스직 업무

3)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업무

4) 직업훈련에 관한 기준이나 교재 작성 업무

나. 실무경력은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